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응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553

발의연월일: 2021. 11. 26.

발 의 자:조응천·김교흥·김두관

김민기 · 김철민 · 김정호

문진석 · 오영환 · 우원식

한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%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등 오늘날 한 개의 대도시를 넘어서 생활, 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도시권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교통혼잡이 가속화되고 광역교통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평균 2천만명이 대도시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

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근무시간 단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의 고급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도 필요합니다. 그러나 현재 광역교통 서비스가 어느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부재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한 조사 및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이에 광역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광역교

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광역교통 서비스의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1 0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2(광역교통 서비스 조사·평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수준을 조사·평가(이하 "광역교통 서비스 조사·평가"라 한다)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·평가 결과를 광역교통시행계획, 광역교통 개선대책, 특별대책의 수립·시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·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④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·평가의 기준·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0조의2(광역교통 서비스 조사·
	평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
	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
	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및 교
	통수단 등에 대한 접근성 및
	이용편의성 수준을 조사·평가
	<u>(이하"광역교통 서비스 조사·</u>
	평가"라 한다)할 수 있다.
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
	역교통 서비스 조사·평가 결과
	를 광역교통시행계획, 광역교통
	개선대책, 특별대책의 수립·시
	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	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
	서비스 조사·평가를 위하여 관
	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
	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
	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
	른 공공기관의 장 및 「대중교
	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
	법률」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
	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
	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·평가의 기준·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